

의안번호	
의 퇴 인	김재원 의원
회 답 일	2025.2.3.
추계번호	25C0024
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억 7,200만원(연평균 3억 3,4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8조)	811	-	-	861	-	1,672	334

주: 1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식생활 안전지수 통합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2.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실태조사)	○ (제1항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(실태조사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식생활 안전지수 통합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¹⁾에 따라 3년 주기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와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음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⁾
-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1)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제26조의2(실태조사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,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.12. 기준, 단위: %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소³⁾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,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식생활 안전지수 통합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16억 7,200만원으로 추계
 - 202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식생활 안전지수 통합조사에 대한 예산액은 7억 6,000만원
 - －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2023년 예산 7억 6,0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억 7,200만원(연평균 3억 3,400만원)으로 추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8조)	811	—	—	861	—	1,672	334

주: 1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식생활 안전지수 통합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2.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「2021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운영 현황조사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만 2,995개이므로, 급식관리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·장애인 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조사의 규모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assembly.go.kr